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6137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6137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9 선고 2017가단2198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호준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서경수

변론 종결2018. 9. 14.

판결 선고2018. 11. 16.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9. 선고 2017가단2198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대 21,068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m² 지상 블록조 스투트조 지붕 무허가 단층 주택 39m²를 철거하고, 위 선내 부분 39m²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아래에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대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인바 위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목적물의 처분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 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그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로 다만 그 용도가 재배사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래니

판사이용희

판사문채영

별지